

재임용 · 재계약 대상자 심사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7.25.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혜전대학교 재임용 · 재계약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)

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 (구성)<개정 2014.06.02.><삭제 2019.04.17.>

제4조 (위원회 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22.07.25.>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제5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 (위원회 운영)<전문개정 2014.06.02.>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은 자신에 관한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④ 본조 3항에 의한 제척 인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정수는 그 제척인원수를 감한 수로 한다.
-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9.04.17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06.0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07.25>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